

民自黨마련 「영유아보육법안」 토론회

최근 취업문가 급격히 늘어나 타아문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타아 복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平民黨에 이어 집권여당인 民自黨도 최근 「영유아보육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정을 수렴하는 등 타아관련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民自黨은 1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영유아보육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사 위소속 申英順의원(民自黨)이 미리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안의 제안설명에 나선 申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과 보자부탁아사업추진계획에 문제가 있고 주무부서의 난맥상으로 인해 효율적 행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비영리소규모민간탁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탁아소에 재정지원을 할수 없고 따라서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이탁아소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것. 보자부가 계획중인 타아사업 역시 타아대상에 대한 정

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못하는데다가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돼있고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申의원이 여러차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안은 우선 다

원화되어 있는 타아사업관 장부서를 보자부로 단일화 하는 한편 대를형성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의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비용은 보육자부담을 원칙으로하되 저소득층아동의 보육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토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시설아소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정보센터등을 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획조사나 정보제공 상담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하고있다. 이에 대해 강남대 金萬奎교수(사회복지학)는 「申의원」의 법안은 타아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무규정보다

모호한 규정 많아 실효 의문

시설기준 등 중요사항 政府위임은 잘못



는 「할수 있단」 모호한 임의선택 규정이 많아 그 실시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법의 의무규정을 명시해야 할것이 라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또 타아관련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여성개발원과 같은 관련기관을 활용하는것이 좋으며 장애아동도 보육 할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李順炯교수(아동학)는 「탁아법」이 저소득층 아동의 타아비용(국가에서 부담토록하는 내역)의 영아보육법 제정이 民自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金景泰회장은 「申의원」의 법안에서는 타아시설 종사자의 자격 시설기준인 가 및 신고비용부담등 국민의 주요관심사항은 모두 대를형이나 보자부탁아로 정하도록 정부에 위임해 행정권이유주로도 집행될 우려가 높다며 「영유아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등 타아시설을 일반적으로 통제한는 관료적 기구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면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아사업을 신뢰하는 영유아보육위원회는 자치형식적인 기구가 되기 쉽다며 교사 학부모들이 일정비율 참여하는 합리적 심의기구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金회장은 강조했다.

〈李英伊기자〉